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58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하나증권㈜

2. 조치내용

○ 하나증권㈜에 대하여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서 정한 ‘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’으로 과태료 22백만원 부과 조치

○ 하나증권㈜에 대하여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서 정한 ‘설명의무 위반’으로 과태료 315백만원 부과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면제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. 리테일채권 불완전판매

1)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

□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면담·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·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,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,

◦ 하나증권㈜ A지점은 20XX.XX.XX. 일반금융소비자(○명)에게 “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” 채권(○원)을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자의 투자목적·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등을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,

◦ 하나증권㈜ B센터는 20XX.XX.XX. 투자위험등급 5등급의 초저위험상품만 투자권유 가능한 ‘안정형’ 일반금융소비자(○명)에게 투자위험등급 4등급의 저위험상품인 “△△△△ 채권”(○원)을 투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

2) 설명의무 위반

□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,

◦ 하나증권㈜ A지점 등 5개 지점은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채권의 투자권유 및 판매함에 있어서 총 ○회(총 ○원)에 걸쳐 수수료, 민원처리·분쟁조정절차, 해지·해제 관련 사항 등의 설명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○ (지적사항 1.1))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17조 제2항 및 제3항, 舊「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」 제11조 제1항, 제3항 및 제4항

○ (지적사항 1.2))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19조 제1항 및 제3항, 「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」 제13조 제4항, 제8항 및 제10항